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265호

**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제정  
훈령(안) 행정예고**

2014. 7. 30.

중소기업청

##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265호

「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7월 30일

중소기업청장

###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제정 이유

-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음
-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
  - \*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청차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 동일 지방청에서 연이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
- 「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」 음주운전 징계기준(제2조제1항 관련)에 근거하여 자체기준을 제정
  - 음주횟수,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따른 사건유형별 양정기준\*에서 높은 단계의 징계 처분을 적용
    - \* 최초 음주운전 : 견책~**감봉**, 2회 음주운전 : 정직~**강등**
  -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자체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
    - \* 음주운전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견책으로 감경처리('14.6)

## 2. 주요 내용

### ① 음주운전 관련자에 대한 처리기준

-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
-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은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개정('11.11.1)에 따른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기준 적용시점인 2011.12.1 이후 음주운전부터 적용

### ②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

-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,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면직 조치

### ③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

< 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”과 자체처리기준 대비표 >

음주운전 유형	시행규칙 처리기준	자체기준	비 고
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	없음	견책	1. 음주운전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. 2.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. 3. "중상해"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,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·중대변형,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·불치의 부상·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·질병을 말한다.
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	견책-감봉	감봉	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감봉-정직	정직	
음주운전으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감봉-정직	정직	
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정직-강등	강등	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정직-해임	강등-해임	
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정직-해임	강등-해임	
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	강등-해임	해임	
음주운전으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정직-파면	강등-파면	
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해임-파면	파면	

### 3. 의견 제출

「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」 제정 훈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(우편번호 : 302-701, 주소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 중소기업청, 참조 : 감사담당관실, 전화 042-481-4337, 팩스 042-472-326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[붙임]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(안) 전문

중소기업청 훈령 제 2014-호

##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(안)

제정 2014. 8. 00 중소기업청 훈령 제2014-00호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공직사회 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
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“음주운전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.05%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
2. “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
3. 면허취소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

제4조(처리기준) ① 음주운전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 「공무원징계령」 제7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

②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은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개정(‘11.11.1)에 따른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기준 적용시점인 2011.12.1 이후 음주운전부터 적용한다. 다만 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」 개정(2009.4.22) 이후 음주운전 전력은 징계의결시 참작하도록 한다

제5조(징계양정기준) ①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음주정도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

②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

③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유형별 징계양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,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면직 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

제6조(적용특례)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안정행정부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 “Ⅲ. 공무원 음주사건 처리”」 규정에 따른다

## 부 칙(2014. 8. 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및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 “Ⅲ. 공무원 음주사건 처리”」 규정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

[별표]

##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징계양정기준 (제5조제1항 관련)

음주운전 유형	처리기준	비 고
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	견책	1. 음주운전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. 2.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. 3. "중상해"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,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·중대변형,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·불치의 부상·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·질병을 말한다.
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	감봉	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정직	
음주운전으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정직	
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강등	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강등-해임	
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강등-해임	
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	해임	
음주운전으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강등-파면	
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파면	